



하반기부터 물류시스템에도 인증제 도입

기표원, 이르면 9월부터... 유통업체, 원료 도착서 포장·운송까지 표준설비 갖춰야 'LS마크'

물류표준설비인증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게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이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올 하반기에는 표준설비·정보기기·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 현장심사·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자부·건교부·해수부가 올해부터 공동 실시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에서 중복심사 방지차원의 점수 부여 및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우대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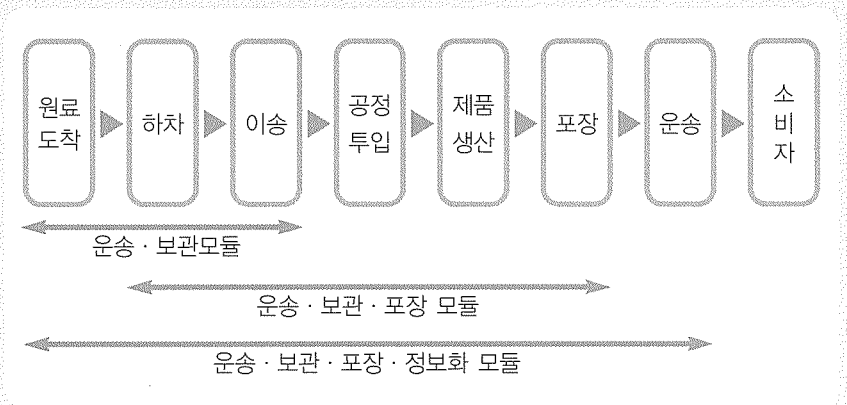
※ 종합물류기업인증 :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건교부·해수부가 공동으로 종합물류전문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기표원은 지난 '04년 7월부터 제품별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시행, 4월 현재까지 78개 업체 17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물류시스템과 심사

물류시스템(모듈)을 인증대상에 포함

- 물류설비 사용자에게 대하여 운송, 보관, 분류, 포장 및 자동화설비 등 각 개별 설비 3~6개 조합된 모듈 및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
- * 모듈별 물류표준설비 표준규격 제정 및 ULS 연계성 확인(필요한 규격 개발에 연구용역 실시)



〈 물류모듈시스템 예시 〉

심사반 구성 및 심사절차 전문화

□ 현장 심사반 확대 및 심사절차 전문화

○ 현행

- 인증심사원 2명이 물류표준화 분야와 제품의 공정관리 및 제품관리 등 4분야를 전부 심사
- 인증심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인증심사기준 및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상정



○ 개선

- 현장 심사팀을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공정관리 전문가 등 4명으로 확대 개편
-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와 물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최종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풀에서 선정하여 구성
 - 구성 : 분야별(수송, 운반, 보관, 정보)로 15인 이내로 구성
 - 기능 : 현장심사 및 제품시험결과 심의



심사결과를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에 제공

- 물류표준설비 인증 목적중의 하나는 물류표준 설비의 보급·확산을 통한 표준화를 제고에 있음
 - 전문가 풀에 의한 심사반 구성·운영을 통하여 현장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업체의 물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도록 함.
 - 현장심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업에게 피드백하여 선진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유익한 정보로 활용도록 함.
- ⇒ 물류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효과가 있도록 심사항목을 조정